

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8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하여 민원상담,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‘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’, ‘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’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임
- 나.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성과, 개선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,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‘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’ 사무로 통합하여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- 다. 공항소음 또는 소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
- 나. 민간위탁 유형 : 예산지원형(사무형 위탁)
-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 - 「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주민지원사업), 제5조(주민지원사업의 위탁)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 위탁 사무의 기준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‘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’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,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

마. 위탁사무 내용

-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-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바. 위탁기간 : 3년 ('26. 1. 1. ~ '28. 12. 31.)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아. 소요예산 : 781백만원(민간위탁금, '26년 기준)

자. 기대효과

-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대 및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
- 위탁사무 통합관리로 주민 요구사항에 효율적 대응

차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※ '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5.7.16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항 시설관리자(이하 “시설관리자”라 한다)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주민지원사업)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.

1.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2.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3.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주민지원사업의 위탁)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(예정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‘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’, ‘고척동 공항소음대책
주민지원’ 사무 민간위탁 종료 후 신규 민간위탁 추진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백윤미 (☎2133-4254)